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5. 3. 31.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에 별도 기탁금 등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그 밖의 수입금” 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수입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p> <p>2. 「서울특별시약력 1·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p> <p>3.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세입) -----</p> <p style="text-align: center;">-----</p> <p>1. ~3.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4. 그 밖의 수입금</p>